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78 발의연월일: 2021. 1. 19.

발 의 자: 강민정·강득구·김병욱

김영호 • 류호정 • 민홍철

양기대 • 양정숙 • 윤미향

윤영덕・이수진(비)・이탄희

임호선 · 정찬민 · 최강욱

황운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제7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학생의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학생의"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을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을"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 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1.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2. 국내외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5.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6.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지역 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 2. 학생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 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의 위탁·수탁에 필 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3(학생의 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
	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 | 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립·시행) ① -----제3조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이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학생 건강지원 전문기 관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 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

- 1.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의 지원
- 2. 국내외 학생 신체 및 정신건 강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 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 간
-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
 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5.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6.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 2. 학생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 진을 위한 상담
-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의 위탁·수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지 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